서울시설공단

상수도 공사감독 단계별 이행사항 체크리스트(4월)

◗ 해당되는 업무 단계별 이행사항에 표시*(비고 : 미준수 또는 해당사항 없을 경우 반드시 내용 기재)*

○ 공 사 명 : 장지동 840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

구 분	업무내용	준수사항	준수	미준수	해당없음	비고
공사착공	사전 설계도서 검토	계약심사 전 설계참여 이행 *팀장전결	■	□	□	2.28
	공사감독자 지정	이력제 확인(ETIS연동) 및 공동감독자 (2인이상) 지정 후 발주청 통보 *팀장전결	■	□	□	4.15
	착수전 설계도서 검토 보고회 개최	대행 후 2주 이내 개최 *처장전결 (부득이한 경우 실착공 7일 전까지)	■	□	□	4.30
	감독업무 착수신고	공사 2건 이상 감독시 공사건별 감독업무 계획서 제출	■	□	□	3.6
	착공신고서 검토보고	공사 예정공정표, 계약서 사본,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등 검토 및 발주청 보고(7일이내) *처장전결	□	□	■	4.29
	직접시공계획서 검토보고	도급자 직접시공 비율, 직접시공계획서 통보일 기한 검토·보고서 작성 *팀장전결	□	□	■	전문공사 서류제출 제외
	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	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-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-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여부 - 하도급률 적정성 등 검토 *처장전결	□	□	■	
공사시공(1)	시공계획서 검토 승인	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*팀장전결	■	□	□	4.29
		- 안전관리대책, 최초위험성평가 검토·확인 - 주요장비 투입계획 검토·확인	■	□	□	4.29
	장비작업계획서 검토보고	장비작업계획서 검토보고서 작성 *팀장전결	■	□	□	4.30
	품질관리(시험) 계획서 검토	검토보고 후 발주청 승인 요청(7일이내) *팀장전결	■	□	□	4.29
	검측계획 수립	공종별 검측계획 수립 여부 (업무지침서 별표1 참고) *팀장전결	■	□	□	4.17
	수시위험성 평가 실시	- 6등급(중점관리) 지정 필수 - 9등급(특별관리) 대상 지정 이행·확인	□	□	■	
	품질시험 이행확인	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제출·확인 (→기성부분검사, 준공검사 요청 시 확인) *팀장전결	□	□	■	
	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 검토	매월 5일 시공사 공문 접수 *팀장전결	□	□	■	
		매분기 15일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*팀장전결	□	□	■	
	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	검토 보고 후 7일이내 승인 *팀장전결	■	□	□	4.29
	매몰부분 검사기록	- 감독일지에 검측내용 상세기록 - 사진촬영 및 검측대장 현장관리 (→ 준공시 제출·확인)	□	□	■	
	감독일지 작성	육하원칙에 따라 근무시간별 행정업무 및 구두지시 사항·검측내용 기록 (매일작성) ※첨부: 수시위험성평가서(교통안전시설 포함) *팀장전결	□	□	■	

서울시설공단

상수도 공사감독 단계별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(4월)

구 분	업무내용	준수사항	준수	미준수	해당없음	비고
공사시공 (2)	실정보고 작성 검토	도급액 1억원 이상 증감 *본부장전결	☐	☐	■	
		중요한 공법변경 또는 (세부)공종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증감 *처장전결	☐	☐	■	
		5천만원 미만 공사구간내 경미한 사항 *팀장전결	☐	☐	■	
		승인요청 기한: 일반사항 - 3일이내 검토, 승인요청	☐	☐	■	
		승인요청 기한: 구조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 - 7일이내 검토, 승인요청	☐	☐	■	
	〈설계변경심의 개최전〉 -본부,자체 공통- 설계변경도서 작성·보고	- 설계변경서류 검토 및 작성	☐	☐	■	
		- 사전심사자 현장방문 후 시공수량 확인	☐	☐	■	
		- 설계변경내역서 사전심사자 및 팀장 확인(서명) 여부	☐	☐	■	
	〈설계변경심의위원회〉 -본부심의- (공종별 3천만원 또는 도급비 10%이상 증액)	도급액 3억이상 증액(위원장:시설안전본부장) *처장전결	☐	☐	■	
		도급액 3억미만 증액 (위원장:공사감독1처장) ※필요시 공사감독2·3처장지정 *처장전결	☐	☐	■	
	〈설계변경심의위원회〉 -자체심의-	본부심의 제외공사 최종 설계변경 실시 *처장전결	☐	☐	■	
	〈설계변경심의 개최후〉 설계변경도서 작성·보고	- 심의위원회 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- 설계변경보고서 결재 후 발주청 통보 *처장전결	☐	☐	■	
기성 및 준공	기성부분 검사서 보고	검사원 접수 후 7일이내 *팀장전결	☐	☐	■	
		검사자(해당그룹) 지정 기준 준수 - 기성금액 3억 미만 : 차장이하 2명 - 기성금액 3억 이상 : 팀장포함 2명 ※부득이한 경우 팀내 직원(타그룹) 지정	☐	☐	■	
		검사자 현장방문 후 시공수량 확인여부	☐	☐	■	
		기성검사 지적사항 조치여부	☐	☐	■	
	준공기한 연기원	준공기한 연기 적정성 검토보고 후 발주청 승인요청(설계변경 제출기한 기재) *처장전결	☐	☐	■	
	준공검사	검사원 접수 후 14일이내 처리 *처장전결	☐	☐	■	
		검사자(해당그룹) 지정 기준 준수 - 준공금액 3억 미만 : 차장이하 2명 - 준공금액 3억~20억미만 : 팀장포함 2명 - 준공금액 20억이상 : 처장포함 3명 ※부득이한 경우 팀내 직원(타그룹) 지정	☐	☐	■	
		검사자 현장방문 후 시공수량 확인여부	☐	☐	■	
		준공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	☐	☐	■	
	기존관 처리	불용(기존)관 분기점 철거 및 폐쇄보고 •불용(기존)관은 전량 철거하여야 한다. 다만 철거가 불가능 할 시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구간별로 보고한다. *팀장전결	☐	☐	■	
	현장문서 인계·인수	공사준공 후 14일이내 발주청에 인계·인수 *팀장전결	☐	☐	■	

작성자	공사감독2처 상수도1팀 노용환
확인자	공사감독2처 상수도1팀 이창재